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이광성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136호

다. 발의일자 : 2018. 9. 10

라. 회부일자 : 2018. 10. 1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베란다형¹⁾,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²⁾하고 있지만, 동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세제·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W당 1,400원

2) '19년도 예산안 244억 5천6백만원(별도 국고보조금 171억원 요청 중)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예〉

현 행	개 정
30명 이내	30명 이내
2인	2명
하절기	여름철
동절기	겨울철